

참되고(德), 알차고(知), 굳세게(體)

제1장 총칙

학생생활규칙



설월여자고등학교

제1조(명칭 및 범위) 이 규칙은 '설월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 3(학생생활지도), 교육부고시 제 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정의)

- ①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③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규칙 적용의 원칙)

-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된다.
- ③ 학칙 등 학교의 다른 규정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6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장, 교원, 학생의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생생활규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에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생생활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7조(학생의 권리)

- ① 학생은「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기타 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⑤ 학생은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단,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 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활동과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⑮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⑯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⑲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㉔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8조(대인관계에서 자세)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

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학생은 수도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1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2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학생은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 시간을 준수한다.
- ② 학생은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 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 정돈 등에 관한 말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3조(휴식 시간)

- ① 휴식 시간(식사 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휴식 시간(식사 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일과 중 휴식 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⑦ 휴식 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⑨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4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항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 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본드, 폭죽, 부탄가스, 화학약품, 인화물질 및 전열기 등)
- ②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 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④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⑥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⑦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술, 담배,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등)
- ⑧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등

제15조(용모 및 복장)

-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단,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지나친 개성 표현은 지양한다.
- ② 학교 구성원(학생자치회,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해 학교에서 정한 교복에 대해서 교복을 변형시키지 않고 바르게 착용한다.
- ③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④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품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 ⑥ 15조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정한 교복을 변형시키거나 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학생은 '기본생활습관정착을 위한 성찰교실 운영 계획'에 의해 처리한다.

제16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7조(개인정보 침해 및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행위)

- ① 개인정보 침해 행위 또는 모방범죄, 범죄 발생 예고 등 인터넷상에서 범죄 관련 허위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경우
 - 1. 1회 적발 시 주의 지도하고, 담임교사는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 및 지도 요청한다.
 - 2. 2회 이상 적발 시 정보보호(윤리) 관련 교육과 학칙 제38조 ⑬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3. 생활안전부 담당교사의 지도 및 관리를 받는다.
- ② 교원이 학생생활지도의 위급한 상황 시 교원은 주위 학생이나 교원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을 하도록 하여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 녹화·녹음한 자료가 다른 곳에 유포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18조(수업 중 학부모·학생의 비밀 녹음 또는 실시간 청취)

- ① 학생·학부모 등 제3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앱) 등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음·합성·배포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없다. 학생의 경우는 다음 호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단, 교사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학생이 개별 학습의 목적으로 수업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업 전에 교사에게 녹음을 신청하고 허가를 득해야 한다. 교사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도 녹음파일이 허가된 목적 외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사는 녹음을 중단시킬 수 있고, 녹음 파일의 무단 배포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
 - 1. 1회 적발 시 주의 지도 하고, 담임교사는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 및 지도 요청한다.
 - 2. 2회 이상 적발 시 행동 성찰문 등 과제 부여되며, 학칙 제38조 ⑬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9조(전자기기 사용)

- 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MP3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일과시간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지만,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② 교육활동 과정(조·총례 시간, 수업, 청소 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박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④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 예절을 지킨다.
- ⑤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자세한 내용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⑥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20조(학내 표현과 집회)

- ① 학교 내에서 학생의 표현과 언론 활동,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 ②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 내에서의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게시판 사용, 집회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학생자치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21조(기타)

-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22조(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이하 '생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생활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안전)담당부장, 생활교육(안전) 담당교사, 교무기획부장, 각 학년 부장, 환경보건부장, 전문상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 ③ 생활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23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24조(체벌 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도구에 의한 체벌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5조(교원의 지도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①항~제③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비행 및 범죄 예방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교원의 생활지도 방식)

① (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조언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한다.

1.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 활동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한다.

1.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 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2.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목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 다.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그 위험성과 규칙 위반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경고할 수 있다. 주의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한다.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기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④항에 따른 훈육 또는 제⑤항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전에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④ (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훈육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한다.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써 제지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생활지도	요건	분리 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상담 및 학습지원
가.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나.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도 포함)			
다.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 '가' 또는 '나'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 문 밖 복도 (수업 시간 10분 이내)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수업 활동 이행 또는 수업교재 요약 등 과제 부여
	2) 가)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나) 1)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1. 교감실 2. 교장실 3. 학년실 또는 특별실 특별실의 경우 3학년은 신관 2층 특별실1, 1·2학년은 본관 4층 특별실5 (수업 종료 시까지)	▶교사가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인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지도 및 관리 순위 1. 교감 2. 교장 3. 담임교사 4. 학년 생활지도 교사	행동 성찰문, 수업교재 요약 등 과제 부여
라.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1) '다' 의 2)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학년실, 특별실 특별실의 경우 3학년은 신관 2층 특별실1, 1·2학년은 본관 4층 특별실5 (방과후 30분 이내)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알림 ▶지도 및 관리 순위 1. 담임교사 2. 학년 생활지도 교사	상담 또는 훈육,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2)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본관 4층 특별실5 (방과후 60분 이내)	▶담당 교사는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알림 ▶지도 및 관리는 생활안전부 담당교사	상담 또는 훈육,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제 '다' 및 제 '라'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전화 및 문자로 상황을 설명하고, 학칙 제38조(징계기준)㉒항, ㉓항에 의거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수 있다.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요건	분리 기간	분리 장소 및 관리	분리 방법
가 (전자기기 사용 지도) 휴대전화 및 휴대용 전자기기 소지 규정 위반	수업시간	교탁 위, 수업 교사	▶ 1회 규정을 어길 시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교사에게 제출한 후 해당 교육활동 종료 후 돌려받는다. ▶ 2회 규정을 어길 시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교사에게 제출한 후 해당 교육활동 종료 후 돌려받는다.
	수업시간 ~ 정규수업 종료까지	분리 장소 및 관리하는 수업 교사가 결정 [담임교사 협조 가능]	▶ 3회 규정을 어길 시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교사에게 제출한 후 해당 일 하교 시 돌려받는다. 그리고 지도교사는 담임교사에게 지도 내용을 전달해야 하고, 담임교사는 가정통신을 발송하여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규제가 필요함을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한다. ▶ 4회 이상 규정을 어길 시 학생생활규칙 제38조 ㉔항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수 있다.
* 누적 횟수는 한 학기로 규정한다.			
나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홍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도박 물품, 본드, 폭죽, 부탄가스, 인화물질 및 전열기 등)	보관기간 3일	학년실 등 생활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장소	▶지도교사는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지도교사는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고, 생활안전부 담당교사는 물품 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칙 제38조(징계의 기준) ㉔항, ㉕항, ㉖항, ㉗항에 의거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수 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술, 담배, 마약, 향정신성 약물 관련, 휴대용 게임기, 선정적 사진이나 영상물 등)	보관기간 3일	학년실 등 생활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장소	▶담임교사는 학생 보호자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생 보호자가 내교하여 받아간다. * 학생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한다. [단, 확인된 물건 중 폭발물, 마약류 등은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8. 교원은 제5호제다목, 제라목 및 제7호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6조의5에 따른 학급 담당교원은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 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①항에 따른 조언, 제②항에 따른 상담, 제③항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④항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훈계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한다.

1.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 훈계 사유에 합당한 다음 각 목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가.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나. 회복적 성찰문, 수행과제 등 성찰하는 글쓰기
 - 다. 훼손된 시설·물품·오염 등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 라.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마.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제27조(성찰교실 운영)

- ① 학교장은 기본습관 정착을 위해 성찰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성찰교실 운영은 교감이 총괄하며, 지도 및 운영은 전교사가 함께 진행해 나간다.
- ③ 성찰교실에서의 지도는 학생의 출입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되, 그 절차와 운영은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제28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검사(조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교사가 실시한다.
-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

는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 제①항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 및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4조 제②항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제14조 제⑦항에서 예시한 물품을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
- ⑧ 제26조제④항 제7호에 의거하여 소지품을 검사하여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이 확인되는 경우 생활안전부에서 지정한 장소에 3일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지도교사는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2. 지도교사는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고, 생활안전부 담당교사는 물품 분리보관 일지를 작성·관리함 [학칙 제38조(징계의 기준) ⑩항, ⑫항, ⑬항, ⑮항에 의거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수 있다.]
 3. 담임교사는 학생 보호자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생 보호자가 내교하여 받아간다.
 4. 학생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한다. [단, 확인된 물건 중 폭발물, 마약류 등은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제29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전자기기 소지 규정 세부 지침 적용[부록1]

- ①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 ② 제19조 제②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③ 제②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30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

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제31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학교내 봉사 : 4일 이내(1일 4시간)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② 사회봉사 : 5일 이내(1일 8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내(1일 8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퇴학처분 :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⑥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 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사안처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32조(징계의 방법)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 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 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②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

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④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⑤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 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 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4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35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 ① 생활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③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36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37조(사후 조치)

- ① 담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 ②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와 동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하여 전학 또는 재입학이나 편입학 할 수 있다.

제38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①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	○	○	○	○
②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	○	○	○	
③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위협, 폭행 등	○	○	○	○	○
④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	○			
⑤	기초질서 및 공동도덕의 상습적 위반	○	○			
⑥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	○	○	○
⑦	상습적인 수업 준비 및 태도 불량	○	○			
⑧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	○	○	○	○
⑨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	○	○	○
⑩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	○	○
⑪	흡연 및 음주	○	○	○	○	○
⑫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	○	○	○
⑬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	○	○	○
⑭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	○	○			
⑮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위반	○	○			
⑯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	○			
⑰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참여	○	○	○	○	○
⑱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	○	○	○
⑲	개인정보 침해 및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행위	○	○	○		
㉔	기타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한 행위	○	○	○		

제5장 규칙의 개정

제39조(규칙 제·개정심의위원회)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규칙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매년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교감 및 생활안전부장은 당연직 교원위원, 학생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학생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제6장 기타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전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2.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2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3조(연수 및 교육) 학교는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44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2.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요청

제45조(생활지도에 대한 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①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46조(보상)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생활규칙을 잘 준수하며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 중 모범이 되는 학생(모범상)을 추천할 수 있다.
 - ② 다만 학교의 장 또는 교원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은 학생공적심사위원회의 선정 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2021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록1]

전자기기 규정 위반 시 지도(세부 지침)

- 1회 규정을 어길 시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교사에게 제출한 후 해당 교육활동 종료 후 돌려받는다.
- 2회 규정을 어길 시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교사에게 제출한 후 해당 교육활동 종료 후 돌려받는다.
- 3회 규정을 어길 시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교사에게 제출한 후 해당 일 하교 시 돌려받는다. 그리고 지도교사는 담임교사에게 지도 내용을 전달해야 하고, 담임교사는 가정통신을 발송하여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규제가 필요함을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한다.
- 4회 이상 규정을 어길 시 학생생활규칙 제38조 ⑩항에 의거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수 있다.
- 5) 누적 횟수는 한 학기로 규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2023년 7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규정을 반영한 개정으로 반영 내용과 현행 규칙이 상충 될 때는 고시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